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 및 법률 현황

Current State and Laws of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in the U.S.A

김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대구중학생 자살사건¹⁾’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문제가 사회적 과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사건은 1999년 콜롬바인 사건²⁾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 다시 미국내에서 학교폭력문제가 크게 이슈화 된 것은 2011년 11월 플로리다 농공대

에서 발생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사망사건³⁾이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성애자여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성적소수자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 LGBT)의 따돌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최근 2~3년 동안 미국 내에서 피해학생의 사망 혹은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매체의 잇따른 보도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또한 최근에는 가해학생을 흥기로 살해한 학생에게 무죄를 선고⁴⁾하여 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이처럼 미국내에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은 다시금 새롭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1) 또래 2명의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로 힘들어 하던 대구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2011년 12월 20일). 대구지법은 가해자로 구속 기소된 A군과 C군에게 실형을 선고(2012년 2월)

2) 콜롬바인 총기사건은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롬바인 고등학교 다니던 에릭 해리스와 딜란 클레볼드라는 두 학생이 학교내에서 900여발의 총을 난사해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이 사망하고, 본인들도 자살, 총 15명이 사망한 사건. 이 사건을 배경으로 “볼링포 콜롬바인(bowling for columbine)”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됨.

3) 마칭밴드부에서 드러머로 활동하던 로버트 챔피언이 선배들로부터 따돌림과 구타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건

4) 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은 지난해 학교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소년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2012년 1월 판결)

있다.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물리적 폭력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지면서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집단따돌림(bullying)이다. 예전에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의 개념은 몇몇 학자나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구분되었을 뿐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학교폭력 범주에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집단따돌림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서도 집단따돌림에 대해 단독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관련 정책 및 법률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집단따돌림 실태 및 법률 현황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집단따돌림 근절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법률을 제·개정하려는 다각적인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단따돌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수단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⁵⁾

1) 학교폭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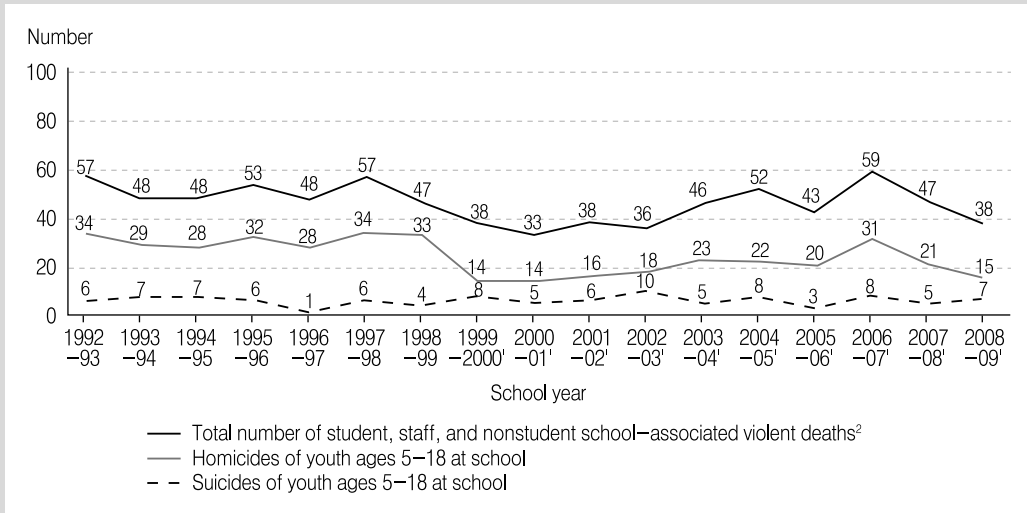
미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와 미 법무부 산하 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보고에 따르면⁶⁾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은 한 해 약 30~60건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년 10명 이상의 학생이 사망하고 있으며 5~10명의 학생이 자살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2008~09 학기 동안 38건의 학교폭력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15명이 살해당하고 7명이 자살하였다.

미국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199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8년 12~18세 학생 약 1천 2백만 명의 학생이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중에서 619,000명은 절도, 629,800명은 폭력범죄를 경험하였다. 이는 1천명당 47명이 학교 내(at school)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전년도 57명에 비해 상당수 감소하였다. 학교폭력의 발생장소로는 학교 내의 발생률이 학교 밖(away from school)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흉악한 폭력의 경우 학교

5)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집단따돌림(bullying), 신체적 싸움(fighting), 무기사용(weapon use),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격(electronic aggression), 범죄조직에 의한 폭력(Gang aggression) 등을 포함하고 있음(<http://www.cdc.gov/ViolencePrevention/youthviolence/schoolviolence/>). 이처럼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 유형의 하나로 정의되기도 함.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정부내에서도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파악이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본 원고에서는 미국정부에서 보고하는 원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고 있으며 원자료에서도 따로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본 원고에서도 따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의 정의를 명시하지는 않겠음. 참고로 미국내에서도 집단따돌림(Bullying)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다양하며가장 폭넓게 지지받고 있는 일반적 정의로는 힘의 불균형, 해를 입힐 의도성, 반복성을 포함하고 있음(<http://www.cdc.gov/violenceprevention/>).

6)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2011). Indicator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0.

그림 1. 연도별 학교폭력사망 관련 학생수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2011). Indicator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0. p.7 'Figure 1.1. Number of Student, staff, and nonstudent school-associated violent deaths, and number of homicides and suicides of youth ages 5-18 at school: school years 1992-93 to 2008-09'

밖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는 1천명당 47명이 범죄피해를 경험하였고 학교 밖에서는 1천명당 38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악한 폭력범죄의 경우 학교 내에서는 1천명당 4명, 학교 밖은 1천명당 8명으로 학교 내 보다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흑인학생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가구의 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인 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률은 1천 명당 7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폭력의 경우 최하소득 가구인 경우 1천 명당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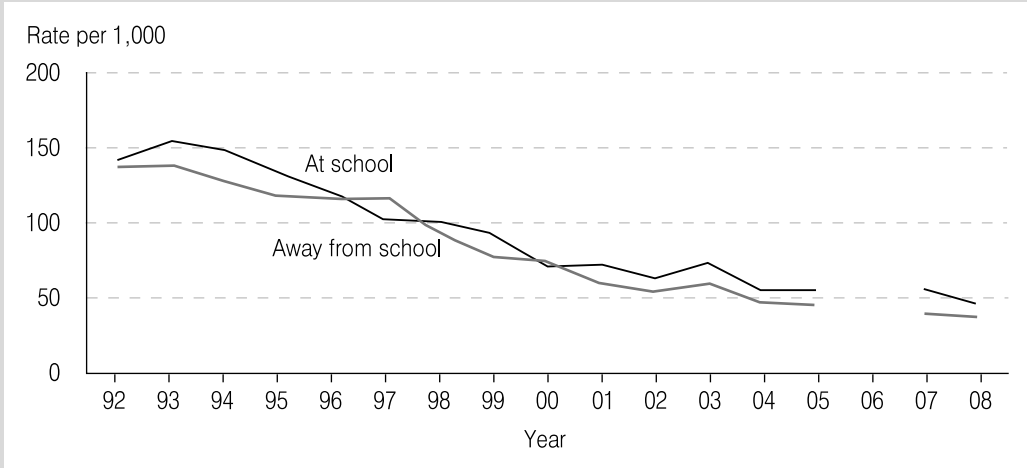
명이 발생하여 가장 높았다. 반면 75,000달러 이상 가구의 경우 심각한 폭력이 1천 명당 1명으로 모든 소득구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집단 따돌림 실태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의 보고⁷⁾에 따르면 2008~09 학기동안 12~18세 학생의 28.0%가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은 남학생의 26.6%가, 여학생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29.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따돌림 경험은 높아졌다.

7)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1). Student Reports of Bullying and Cyber-Bullying: Results From the 2009 School Crime Supplement to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그림 2. 연도별 학교폭력 학생 1000명당 피해 경험률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2011). Indicator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0. p.7 'Figure 1.1. Number of Student, staff, and nonstudent school-associated violent deaths, and number of homicides and suicides of youth ages 5-18 at school: school years 1992-93 to 2008-09'

표 1. 2008년 12~18세 학생 1천 명당 학교폭력 발생수

(단위: 명)

구분	학교내			학교밖		
	전체	12~14세	15~18세	전체	12~14세	15~18세
전체	47	49	46	38	25	49
절도 ¹⁾	24	22	25	19	14	24
폭력 ²⁾	24	27	21	19	12	25
흉악한 폭행 ³⁾	4	5	4	8	4	11

주: 1) 절도(Theft): 날치기(purse snatching), 소매치기(pick pocketing), 모든 절도행각(all burglaries)
 2) 폭력범죄(violent crime): 심각한 폭행사건(serious violent incidents), 단순한 폭행죄(simple assault)
 3) 흉악한(가혹한) 폭력(severe violent): 강간(rape), 성추행(sexual assault), 강도(robbery), 가중처벌이 가능한 강도 흉악범죄(aggravated robbery), 불법침입시도(attempted forcible entry), 자동차 절도를 제외한 모든 절도시도 및 절도행각(all attempted and completed thefts except motor vehicle theft)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2011). Indicator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0. 재구성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7,500~14,999달러 소득가구가 32.3%, 15,000~24,999달러 소득가구가 30.9%로 다른 소득가구에 비

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가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표 2. 12~18세 학생 학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현황(사망사건 제외)

구분		범죄수(건)				1,000명당 발생률(%)			
		전체	절도	폭력	심각한 폭력	전체	절도	폭력	심각한 폭력
전체		1,248,800	619,000	629,800	113,300	47	24	24	4
성별	남성	736,900	350,800	386,100	75,400	55	26	29	6
	여성	511,900	268,100	243,700	37,900	40	21	19	3
연령	12~14	589,800	267,300	322,600	58,000	49	22	27	5
	15~18	658,900	351,700	307,200	55,300	46	25	21	4
인종	백인	696,500	327,200	369,300	35,400	44	21	23	2
	흑인	259,700	117,300	142,400	28,000	68	31	37	7
	히스패닉	240,200	140,100	100,100	44,000	47	27	20	9
	기타	52,300	36,400	14,900	5,800	32	21	11	4
가구 소득	\$15,000 미만	108,200	21,900	80,300	8,100	72	19	54	5
	\$15,000~29,999	113,900	68,900	45,000	8,400	41	25	16	3
	\$30,000~49,999	207,700	109,100	98,700	26,000	49	26	23	6
	\$50,000~75,999	212,100	92,400	119,700	21,400	56	24	31	6
	\$75,000 이상	310,100	187,500	122,600	10,400	41	25	16	1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2011). Indicator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10. p.7 'Figure 1.1. Number of Student, staff, and nonstudent school-associated violent deaths, and number of homicides and suicides of youth ages 5-18 at school: school years 1992-93 to 2008-09

표 3. 12~18세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따돌림 경험률

구분		피해경험률(%)
전체		28.0
성별	남성	26.6
	여성	29.5
학년	6th	39.4
	7th	33.1
	8th	31.7
	9th	28.0
	10th	26.6
	11th	21.1
가구소득	\$7,500 미만	28.9
	\$7,500~14,999	32.3
	\$15,000~24,999	30.9
	\$25,000~34,999	28.2
	\$35,000~49,999	27.4
\$50,000 이상	28.4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1). Student Reports of Bullying and Cyber-Bullying: Results From the 2009 School Crime Supplement to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 학교는, 학교 건물, 학교 구내, 스쿨버스, 학교 통학 중 모두 포함.

따돌림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롱, 욕하기, 모욕등을 경험하는 학생이 18.8%, 루머의 대상이 된 경험은 16.5%로 언어적 및 정서적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밀침, 넘어트림, 침뱉기 등 가벼운 상해도 9.0%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따돌림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교내 복도 또는 계단에서 발생하는 경우 48.2%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시간적으로 판단하면 수업을 받지 않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하교 시간이라 볼 수 있다. 발생빈도는 학년 중 1~2번이 가장 많아 그 빈도가 높지 않으나,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6.3%로 나타나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학생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12~18세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따돌림 유형 및 장소, 빈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유형	조롱, 욕하기, 모욕 등	18.8	18.4	19.2
	루머의 대상이 됨	16.5	12.8	20.3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받음	5.7	5.6	5.8
	밀침, 넘어트림, 침벨기	9.0	10.1	7.9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함	3.6	4.0	3.2
	의도적으로 활동에서 소외	4.7	3.8	5.7
	의도적인 물건 파괴	3.3	3.4	3.2
장소	교실내	33.6	33.1	34.1
	복도 또는 계단	47.2	43.7	50.5
	화장실 또는 라커룸	9.0	10.1	8.0
	매점	6.4	5.3	7.4
	교내 밖(outside on school grounds)	23.6	26.7	20.8
	스쿨버스	6.3	7.0	5.7
	학교 어딘가(somewhere else at school)	3.2	2.8	3.7
빈도	학년 중 1~2번	67.2	66.8	67.5
	한달에 1~2번	18.7	18.6	18.9
	일주일에 1~2번	7.8	7.9	7.7
	거의 매일	6.3	6.7	6.0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1). Student Reports of Bullying and Cyber-Bullying: Results From the 2009 School Crime Supplement to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3.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관련 법률 및 정책추진 현황

1)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미국의 보건복지부 인적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은 2001년부터 'Stop Bullying Now'라는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교육부의 안전한 학교 및 마약이 없는 학교국(Office of Safe School and Drug-Free School)에서도

집단따돌림을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학교가 실시하는 집단따돌림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SERV(School Emergency Response to Violence)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는 교육부 장관을 대표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부, 내무부 장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예방회의(Bullying Prevention Summit)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단따돌림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⁸⁾.

최근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백악관(White House)에서도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근절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단따돌림이 사회적 과장을 일으키자 학생, 교사, 학부모, 관련 전문가와 정치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회의(white house bullying conference, 2011.3.10)를 개최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백악관 홈페이지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출연한 따돌림 금지에 대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따돌림 퇴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stopbullying.gov)를 운영하고 있다.

2) 연방정부차원의 법률 현황

연방정부의 집단따돌림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책추진의지와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현재 미국의 경우 연방법상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과 관련한 단독의 명문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학교와 관련된 기본법인 초·중·등교육개혁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02)에서도 집단 따돌림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법률에서 학교안전강화나 학교내 폭력, 범죄등과 관련하여 따돌림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학교내 안전을 강화하려는 학교안전강화법 2010(School Safety Enhancements Act of 2010)이 제정되어 있으나 동 법률을 학교폭력 혹은 집단따돌림 근절법이라 볼 수는 없다. 법률내용의 일부에 집단따돌

림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경우로는 안전 및 약물 금지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법률(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s)은 2010년 4월 개정하며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폭력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또한 교육개선을 위한 집단따돌림과 범죄조직 감소 관련 법률(Bullying and Gang Reduction for Improved Education Act: H.R. 1589)에도 안전 및 마약금지학교 및 사회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폭력 및 약물중독 예방 활동에 따돌림과 범죄조직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최근 집단따돌림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고조로 연방정부차원의 집단따돌림 근절 법안(Anti-bullying Act)을 상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국가 왕따방지법으로 학교폭력 관련 강력한 처벌의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정부차원의 법률 현황

미국에서는 집단따돌림 문제에 대하여는 주 교육청, 주교육위원회 하에 각 학교구(school District)의 교육위원회와 학교가 각각 대응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교구에 대하여 '집단따돌림방지지침'을 책정하도록 하는 주정부와 주법에 집단따돌림 방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주정부도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콜롬바인 총기난사 사건 등을 계기로 조지아 주정부가 따돌림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학교내

8) 첫 번째 회의를 2010년 8월 개최하였으며, 2차 회의는 2011년 9월에 개최함.

에서의 따돌림과 관련하여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0개가 넘는 법률이 주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 2010년 한해 동안 21개의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1년 4월까지 8개 추가법안을 사인하였다. 2012년 1월말을 기준으로 몬타나(Montana)와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2개 주정부를 제외하고는 48개주 및 특별구에서 집단따돌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집단따돌림방지법의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학생이 높은 학업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률에서 인정하고 주의 교육성이 집단따돌림 방지지침이나 집단따돌림 방지계획의 모델을 작성하여 각 학교구에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구의 지침이나 계획의 책정을 지원하며 각 학교구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의 실태 등에 관하여 주의 교육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⁹⁾.

2011년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¹⁰⁾ 46개주가 따돌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45개 주가 학교에 따돌림 정책을 채택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46개 주정부 중에서 3개주만이 따돌림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36개주에서는 사이버 따돌림과 전자매체를 사용한 따돌림을 금지하는 내용을 교육 법규 안에 포함하고 있다. 41개 주는 따돌림 정책 모델을 개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중 12개주만이 정책모델개발을 법률로 의무화하지 않았다. 하와이, 몬타나, 미시건 3개 주는 따돌림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따돌림정책모델은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주정부

법률내용에는 정책개발 의무화, 따돌림행동에 대한 학교 권한 명시, 금지 행동 정의, 징계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따돌림 관련 법률에 사이버따돌림(Cyber-Bullying)과 관련된 내용도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 집단따돌림 법률은 집단따돌림에 관한 정책모델을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많은 주에서 따돌림 관련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주정부가 따돌림 방지법이 통과한 2006년 이후 추진되었다. 27개의 주정부는 법률로 괴롭힘, 협박, 따돌림을 명시한 정책모델개발을 의무화하였으며 이 중에서 26개주가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법률로 정책개발이 명시되지 않았던 12개 주정부도 모델정책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따돌림 법률이 없는 3개의 주정부도(하와이, 미시건, 몬타나) 주정부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총 41개주에서 따돌림 정책모델이나 지역교육당국에 보급할 수 있는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현재 주정부의 따돌림 모델 중에서 콜로라도, 하와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등의 모델이 베스트 모델로 뽑히고 있다.

4. 맺음말

과거 우리나라의 왕따 현상을 일본의 이지메 현상에 비교하였던 것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9) 법제처(2008.1). 해외법제뉴스, 미국의 집단따돌림방지에 관한 입법동향.

10) 교육부에서 발간한 Analysis of State Bullying Laws and Policies bullying 보고서에서는 주정부의 따돌림 관련법을 분석 (2011년 4월 30일 시점).

표 5. 주정부별 따돌림 방지 정책모델 개발 현황

주정부명	법률로 주정부모델 개발 명시	모델개발 여부	명시일
Alabama	○	○	×
Alaska	○	○	1/1/2007
Arizona	×	×	-
Arkansas	의무아님	○	×
California	○	○	×
Colorado	의무아님	○	-
Connecticut	○	○	2/1/2010
Delaware	○	○	×
Florida	○	○	10/1/2008
Georgia	○	○	1/1/2011
Hawaii*	법률없음	○	-
Idaho	의무아님	○	-
Illinois	○	×	3/1/2011
Indiana	×	×	-
Iowa	의무아님	○	-
Kansas	×	×	-
Kentucky	○	○	8/31/2008
Louisiana	○	○	-
Maine	○	○	2/15/2006
Maryland	○	○	3/31/2009
Massachusetts	○	○	×
Michigan	법률없음	○	-
Minnesota	×	×	-
Mississippi	○	○	2002~03
Missouri	의무아님	○	-
Montana	법률없음	○	-
Nebraska	의무아님	○	-
Nevada	○	○	×
New Hampshire	의무아님	○	-
New Jersey	○	○	4/5/2011
New Mexico	의무아님	○	-
New York	○	○	-
North Carolina	의무아님	○	-
North Dakota	×	×	-
Ohio	○	○	9/30/2007

〈표 5〉 계속

주정부명	법률로 주정부모델 개발 명시	모델개발 여부	명시일
Oklahoma	의무아님	○	-
Oregon	의무아님	○	-
Pennsylvania	의무아님	○	-
Rhode Island	○	○	12/1/2003
South Carolina	○	○	9/1/2006
South Dakota	법률없음	×	-
Tennessee	×	×	-
Texas	×	×	-
Utah	○	○	9/1/2011
Vermont	○	○	1/1/2005
Virginia	○	○	×
Washington	○	○	8/1/2010
West Virginia	○	○	9/1/2011
Wisconsin	○	○	3/1/2010
Wyoming	○	○	9/1/2009

주: 본 자료가 작성된 시점인 2011년 4월 30일 시점에는 하와이주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하와이 주정부도 따돌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1), Analysis of State Bullying Laws and Policies.

럼 학력제일주의 풍토 등 우리나라와 학교문화가 다른 미국의 집단따돌림 현상을 단순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은 총기사건 등과 연관되어 그 피해정도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이버상의 집단따돌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련 정책과 법률을 모니터링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하다.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집단따돌림 예방 및 근절에 힘써오고 있

다. 계속해서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방정부차원에서 국가 집단방지방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따돌림의 문제, 사이버 따돌림,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문제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법률로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내 따돌림 현상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문제에 대해 사전적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사건으로 집단따돌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여론형성이 고조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¹¹⁾’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법률은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법률개정방향과 일치하며 전체적 법률내용의 구성면에서는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제재가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국의 법률의 고도화 및 정교화 작업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따돌림 특히 성적소수자와 다문화아동에 대한 따돌림에 대해서는 예방책이 미비하므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11) 2012년 3월 1일 공포, 2012년 5월 1일 시행